

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6년 2월호

1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- 나.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
- 나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
- 다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라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
- 마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바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사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- 나.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
- 다.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
- 라.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

1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가.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개정)

나.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(금융상품 설명서 기재 · 설명 사항 개정)

1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***가.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2026/1/28 개정 · 2026/3/1)¹⁾****1) 개정 이유**

- ☐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를 의무화하고, 주식기준보상 및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의 관계 등 임원 보수 공시를 내실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☐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(제4-3조 제1항 제3호 나목, 더목 및 러목)
- 사업보고서 등에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결과(찬성주식수, 반대 · 기권 등 주식수)를 공시
 - 임원보수를 공시함에 있어 경영성과와 임원보수와의 관계 및 주식기준 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

나.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(2026/1/30 개정 · 시행)**1) 개정 이유**

- ☐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, 개선된 금융상품 설명서 적용범위 명확화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☐ 금융상품 설명서(요약설명서) 기재 · 설명 사항 개정(제13조 제1항)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제4-3조 제1항 제3호 더목 및 러목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

-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 핵심(요약)설명서의 최상단에 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부적합 소비자 유형, ② 손실가능성 등 위험, 손실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기재·설명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

□ 과징금 부과기준(별표 7)

- 부과·납부 절차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과징금 산정시 100만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(NSDS 잔고보고자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의무 면제)
- 나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(주주권의 제고를 위한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)
- 다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채권시장 전산장애 유발호가 직권취소 근거 마련)
- 라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영문공시 의무법인 확대 관련 기준 개정)
- 마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단기과열종목 지정 대상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제외)
- 바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 호가 직권취소 권한 등 명시)
- 사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공매도 위반 점검대상 거래의 점검결과 정기 보고기한 개선)

2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(2026/1/28 개정 · 2026/1/2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공매도 규제 합리화를 위해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(NSDS) 잔고 보고자가 결제수량 부족으로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 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및 기록 ·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 위함
 - 정부의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을 위한 개선과제의 일환으로 시장감시규정도 동일 내용(제19조의2) 개정 예정
 - NSDS 잔고 보고자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8조의7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세 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종목별 잔고 등을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자

2) 주요 내용

- NSDS 잔고 보고자에 대해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및 기록·유지 의무 면제(제18조의2 제2항 신설)
 - NSDS 잔고 보고자는 NSDS를 통해 모든 매도주문에 대해 공매도 위반 여부 점검이 가능하므로, 결제수량부족 으로 인해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기록 · 유지 의무를 면제
 - 현행 결제수량부족 점검도 실시간 점검이 아닌 사후관리(결제일 점검) 방식이므로 NSDS 보고자에 대한 점 검 의무 면제시에도 무차입공매도 점검 공백이 생길 우려 없음

3) 관련 규정 개정

-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(2026/1/28 개정 · 2026/1/29 시행)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— 제9조의4 제2항 신설

□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(2026/1/28 개정 · 2026/1/29 시행)

— 제13조 제2항 신설

□ 시장감시규정 (2026/1/29 개정 · 시행)

— 제19조의2 제3항 및 제4항

나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(2026/1/28 개정 · 2026/3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 표결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함

— ‘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’(2025.11.17, 금융위)

2) 주요 내용

□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(제6조 제1항 제3호 라목)

—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(찬성률, 반대 · 기권 등 비율)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도록 의무화
 • 현재는 의안별 가결 여부 등만 공시하고 찬성률 등 표결결과 미공시

3) 관련 규정 개정

□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(2026/1/28 개정 · 2026/3/1 시행)

— 제6조 제9호

다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6/1/15 개정 · 2026/2/9 시행, 2026/1/27 개정 · 2026/2/9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호가의 직전 취소를 통해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에 대한 대응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함

□ 대량 · 바스켓매매의 최소 호가금액 기준을 완화하여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채권시장 전산장애 유발호가 직권취소 근거 마련(제70조, 제71조, 제82조, 제83조)

- 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전산장애 및 호가 폭주시의 조치 및 매매계약체결 방법을 정비
 - 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의 취소
 -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
 - 당일 매매거래의 종결

□ 대량매매의 호가금액 요건 완화(제52조 제2항)

- 기존 호가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이 '1억원'에 해당하는 수량이상 요건 중 1억원을 '5천만원'으로 완화

□ 바스켓매매의 호가금액 요건 완화(제53조 제4항 제2호)

- 기존 호가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이 '10억원'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요건 중 10억원을 '2억원'으로 완화

라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2026/1/30 개정 · 2026/3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영문공시 의무화 확대에 따라 공시항목 등 관련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
 - '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'(2025.11.17, 금융위)

2) 주요 내용

□ 영문공시 의무법인 확대 관련 기준(제18조의4 제1항)

- 영문공시 의무법인을 현행 1단계 법인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함에 따라(공시규정 제48조) 자산총액 등 산정 기준을 명시
 - (현행) ①자산 10조원 이상 & 외국인 지분율 5% 이상 또는 ②자산 2조원 이상 & 외국인 지분율 30% 이상

□ 영문공시 항목 확대(제18조의4 제2항)

- 영문공시 항목을 공시규정에 따른 주요경영사항(제7조),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(제8조), 공정공시(제12조), 조 회공시(제15조) 등으로 확대

□ 영문공시 시한(제18조의4 제3항)

- 1단계 법인은 국문공시 당일, 1단계 법인을 제외한 영문공시 의무 법인은 국문공시 후 3매매거래일까지 영문공시 의무
 - 국문공시 시점이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
 - 제8조(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) 공시사항은 국문공시한 날로부터 3매매거래일 이내

마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6/1/7 개정 · 2026/1/12 시행, 2026/1/15 개정 · 2026/2/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종목이 제외됨에 따라 상호 연관되어 운영되고 있는 단기과열종목 지정에서도 해당 종목을 제외하기 위함
- 호가의 직권 취소를 통해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에 대한 대응수단을 다양화하고 거래의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단기과열종목 지정 대상에서 전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종목을 제외(제28조의2 제2항)
 -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단기과열종목 요건 산출대상에서 제외(제28조의3 제4항, 제5호)
 - 대형주의 경우 테마주 등으로 인한 주가 급등락에 따른 위험성이 적으므로 투자경고종목과 마찬가지로 단기과열종목 지정 대상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제외
-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 호가의 직권 취소 가능(제30조의2 제1항, 제30조의2 제2항 제1호)
 - 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 또는 전산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가를 거래소가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음
 -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로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 미체결호가 잔량을 취소할 수 있음
- 호가폭주시 당일 매매거래 종결 근거 마련(제30조의2 제2항 제2호)
 - 전산장애와 마찬가지로 호가폭주의 경우에도 매매거래 종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
- 전산장애 등으로 매매거래 중단 이후 재개시 가격결정방법 정비(제30조의2 제4항)

바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6/1/15 개정 · 2026/2/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 발생 시 장애 유발 호가에 대한 직권 호가 취소 도입 등 대응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매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 호가 직권취소 권한 등 명시(제40조 제1항, 제2항)
 - 거래소의 전산장애 유발 호가 취소,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 발생으로 인한 호가접수 정지 또는 매매거래 중단 조치에 따른 미체결 호가 잔량 취소, 당일 매매거래 종결 등의 권한 명시
- 회원의 현금위탁증거금 예탁액 보고 의무 규정 삭제(제72조의2 제3항)
 - 「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」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

사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2026/1/29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(NSDS) 도입 등 공매도 규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회원의 공매도 점검 의무 등 현행 공매도 규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회원의 준법감시 관련 실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공매도 위반 점검대상 거래의 점검결과 정기 보고기한 개선(제13조의2)
 - 공매도 위반 점검대상 거래의 회원 점검결과와 위원회 보고기한을 변경
 - 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의2 제1항,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 4제1항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매도 호가의 사후관리 대상인 거래
 - ② 차입공매도 호가 표시 없이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증권을 먼저 매도한 후 당일 해당 증권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량으로 재매수하는 거래
 - 해당 점검대상 거래가 발생한 달이 속한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10매매거래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

□ 회원제재금의 감면 등 관련 조항 정비(별표 1)

- 이미 회원제재금 부과조치를 받은 회원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는 경우 기 납부한 회원제재금의 환급 가능 조항을 삭제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서식 개정)
- 나.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(신용평가의견 기재의 충실도 제고 등)
- 다.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(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내부통제 권한 강화 반영)
- 라.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(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(수탁자) 리스크관리 고도화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6/1/26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」 개정(2025.12.29)으로 인한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보고서 서식(별책서식1 제17호) 변경에 따라,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<별지 제1호> 영업보고서 서식 개정
 - <별지 제1호>의 ‘II. 사업의 내용’ 중 순자본비율 I (개별)에 관한 작성 요령 추가
 - ‘III.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’ 중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「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」 개정(2025.12.29) <별표1>에 따라 기재

나.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(2026/1/15 개정 · 2026/8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신용평가업무의 객관성,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강화를 위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2) 주요 내용

□ 신용평가의견 기재의 충실도 제고(제25조)

-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내재된 위험요인 등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 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
□ 신용등급평가위원회 운영 강화(제26조)

- 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평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함
- 평가위원회는 논의 결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, 의사록에는 제출된 주요 의견과 결정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함

□ 신용평가 사후관리가 중단될 경우 공시 의무 신설(제27조)

- 회사는 신용등급 철회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사후관리를 지속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때 지체없이 공표하여 함

□ 평가·영업조직 간 정보·인사 교류 제한 강화를 통한 이해상충 방지(제31조)

- 회사는 영업조직의 임직원이 미공개 내부 평가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함
- 회사는 평가대상에 따라 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부문의 영업담당자와 신용평가담당자 간의 이동에 상당한 제한기간을 두어야 함
 - 평가대상에 따라 조직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영업업무와 신용평가업무 수행 간에 상당한 제한기간을 두어야 함

□ 신용평가자료의 보관기간 연장(제51조)

- 신용평가자료 보관기관을 최소 3년 동안에서 '상법 등 관련 법령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간 동안'으로 개정

다.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(2026/1/7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지배구조법 개정(2024.7) 사항 반영 및 양성평등 임금공시 확산을 위한 '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'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지배구조법 개정 사항 반영
 - 이사회 내부통제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감독,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 등 이사회 내부통제 권한 강화 반영(p 9~10)
-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기술부분 신설(p 92~95)
- 직급, 근속연수 및 성별 구분별 평균 보수액 신설(p 122)

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

2. 보수체계

나. 보수 세부사항

3) 직급, 근속연수 및 성별 구분별 평균 보수액(임직원 1인당 평균액)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임원	직원						임직원 평균 보수
			OO			OO			
			근속연수 0년 미만	근속연수 0~0년	근속연수 0년 이상	근속연수 0년 미만	근속연수 0~0년	근속연수 0년 이상	
전년도 (0000년)	남성								
	여성								
	전체								
당해년도 (0000년)	남성								
	여성								
	전체								

주1) 개별 항목은 직급, 근속연수 및 성별에 따른 1인당 평균보수액(보수총액/임직원수)을 기재한다.

라.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(2026/1/15 제정 · 2026/2/18 시행)

1) 제정 이유

- 금융디지털화, 금융상품 판매채널 다변화 추세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제3자(수탁사)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위함
 -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5.3.12, ‘업무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’ 마련 추진) 후속 조치

2) 주요 내용

-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전사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통합된 관리 체계를 구축·시행·유지(제4조)
 - 통합 체계 구축 시 회사 규모, 업권별 리스크요인 및 위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
- 이사회등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규정(제5조, 제6조)
 -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주체로서 이사회등의 최종책임을 선언적으로 규정
 - 경영진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·시행·유지하고 관련 결과를 이사회등에 보고
- 중점관리 위탁계약 선정, 업무연속성 계획, 기록 문서화 등을 통한 리스크의 종합적 관리(제7조~제9조)
 - 제3자 리스크가 높은 위탁계약을 중점관리 위탁계약으로 선정하고 강화된 리스크관리 수행
 - 재난 발생, 수탁자의 업무중단 등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계획(BCP)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적정성 점검
 -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내역, 위탁 관련 의사결정사항, 실사 결과 등 주요사안은 문서화하여 보관 및 유지
- 위탁계약 단계별 리스크관리 사항 규정(제10조~제13조)
 - (계약체결 전) 위탁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 평가 통해 리스크가 감내 가능한 수준 이내인 것을 확인
 -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한 거래상대방의 서비스 제공 역량 검증 가능
 - (계약체결) 업무수행 범위, 보안요구사항, 위탁자의 권한 및 소비자보호 등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서면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
 - (계약이행 모니터링) 리스크 수준의 주기적 모니터링 및 중대한 리스크 징후 발견 시 경영진에 보고 및 조치
 - 중점관리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리스크평가 주기 단축 등 관리 강화
 - (계약종료) 대체서비스 제공자 확보 및 소비자 피해방지 등 계약 종료절차를 마련하고 리스크 발생가능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종료 후에도 점검 및 관리 의무 규정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